LH 살고 싶은 집과 도시로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기업

행정중심복합도시 6-3M4BL 신혼희망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4.07.29], 주택관리번호 [2024000378]

■ **건설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동 일원 행정중심복합도시 6-3M4BL

■ **공급대상** : 신혼희망타운 내 통합공공임대주택 159호 (일반형 151호, 주거약자용 8호)

- LH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안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6-3M4블록은 **신혼희망타운 통합공공임대(159세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316세대) 및 일반 공공분양(560세대)**이 혼합된 단지로, **금회 공급주택은 신혼희망타운주택 내 통합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07.29(월)**이며, 이는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 공고문 9~15페이지 등 참조]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7.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추고 **자산·소득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세대원수에 따라 공급**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 자격을 추가 충족해야 함) 다만,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2017.07.30 이후 혼인)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6세 이하 자녀 가족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2017.07.30 이후 출생, 태아 포함)를 둔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2017.07.30 이후 출생, 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공급대상별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입주자격 조사 및 검증 부적격자 소명 처리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4.08.09~13	'24.08.20	'24.08.22~26 (주말·휴일 제외)		'24.11.28	'24.12.09~11

※ **공급대상별 입주자격, 신청요건 및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해당 일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조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일정 등은 연기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통합,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임대조건** [※ 공고문 4~6페이지 등 참조]

①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은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통해 산정되며, 동일 공급형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세부 입주자격, 임대조건 및 세대구성원 소득정보 등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은 입주자 세대구성원의 소득, 자산변동 등에 따라 변경 또는 할증 적용**됩니다.

③ 임대조건의 변경(임대조건의 상한, 증액, 할증)은 **공급신청(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및 갱신계약(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정한 시점 기준) 시점의 입주자 소득수준 등을 확인하여 계약시점에 한하여 적용**하며, **임대차기간 중에 소득변경 등에 따라 변경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임대기간**

신혼희망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최대 거주기간이 6년(단,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으로 제한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 [※ 공고문 3페이지 등 참조]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세대구성원 수에 따라 최대 신청가능 면적이 제한**됩니다. 거주 중 세대원수 감소로 인한 공급면적 초과 시에는 임대조건이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분리 배우자세대 포함)**을 대상으로 조회
- (소득 및 자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분리 배우자세대 포함)**을 대상으로 조회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 발생

■ **기타사항**

① 신청접수는 온라인접수[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로 진행하며,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도와드립니다.

② **공급신청은 신청접수일 마감시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③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은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등)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해 사전 연습이 가능합니다.

④ 신청자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

■ 공급형별 공급호수 (※ 행정중심복합도시 6-3M4블록 1,035세대 중 신혼희망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159세대임)

공급 형별	세대 당 계약면적(㎡)					금회 공급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계	일반형 주택	주거약자용 주택			
			기타공용	주차장							
총계						159	151	8			
46A	46.95	16.3119	6.2387	33.6280	103.1286	20	20	-	803,805,806,812, 813,815,816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역난방	'25.01월
46A (주거약자용)	46.95	16.3119	6.2387	33.6280	103.1286	6	-	6	813		
55A	55.96	19.4423	7.4359	40.0814	122.9196	16	16	-	801,802,806,807		
55B	55.95	19.4388	7.4345	40.0742	122.8975	115	115	-	801~816		
55B (주거약자용)	55.95	19.4388	7.4345	40.0742	122.8975	2	-	2	813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빌트인 가전제품 [가스쿡탑(3구), 후드]가 설치됩니다.
- **46A 주거약자용, 55B형 주거약자용 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자**(세부요건은 공고문 9페이지 확인)만 청약신청 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공급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세대원수에 따른 입주가능 면적】

구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일반 가구	~40㎡이하	전용 60㎡이하	전용 80㎡이하	제한 없음
중증장애인 가구	~50㎡이하			

- 일반 가구는 세대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없는 신청가구를, 중증장애인 가구는 세대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신청가구를 의미합니다.
- 거주 중 세대원수 감소로 인한 공급면적 초과 시에는 임대조건이 할증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할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14.갱신 임대조건」 중 임대조건의 할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임대조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입주세대 월평균소득의 비율에 따라 시세 대비 임대료율을 차등 적용(35~90%)하여, **동일 공급형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세대 월평균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세전금액)을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대조건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임대차기간 중 변경되지 않습니다.**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2024년 기준 금액)

[단위 : 원/월]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이하)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기타 소득구간				
	~30%	~50%	~70%	~100%	~110%	~120%	~130%	~150%	~160%	~170%	~180%	~190%	~200%
1인	668,534	1,114,223	1,559,912	2,228,445	2,451,290	2,674,134	2,896,979	3,342,668	3,565,512	3,788,357	4,011,201	4,234,046	4,456,890
2인	1,104,783	1,841,305	2,577,826	3,682,609	4,050,870	4,419,131	4,787,392	5,523,914	5,892,174	6,260,435	6,628,696	6,996,957	7,365,218
3인	1,414,397	2,357,329	3,300,260	4,714,657	5,186,123	5,657,588	6,129,054	7,071,986	7,543,451	8,014,917	8,486,383	8,957,848	9,429,314
4인	1,718,974	2,864,957	4,010,939	5,729,913	6,302,904	6,875,896	7,448,887	8,594,870	9,167,861	9,740,852	10,313,843	10,886,835	11,459,826
5인	2,008,721	3,347,868	4,687,015	6,695,735	7,365,309	8,034,882	8,704,456	10,043,603	10,713,176	11,382,750	12,052,323	12,721,897	13,391,470
6인	2,285,511	3,809,185	5,332,858	7,618,369	8,380,206	9,142,043	9,903,880	11,427,554	12,189,390	12,951,227	13,713,064	14,474,901	15,236,738
7인	2,554,498	4,257,497	5,960,496	8,514,994	9,366,493	10,217,993	11,069,492	12,772,491	13,623,990	14,475,490	15,326,989	16,178,489	17,029,988
8인	2,823,486	4,705,810	6,588,133	9,411,619	10,352,781	11,293,943	12,235,105	14,117,429	15,058,590	15,999,752	16,940,914	17,882,076	18,823,238

- 8인을 초과하는 가구의 기준소득은 1인 증가 시마다, 896,625원씩 증가합니다.
- (사례)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수가 3인 가구이면서 월평균소득이 4,000,000원인 경우 : 4구간 임대조건 적용

■ 공급형·소득구간별 임대조건

- **공급형·소득구간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7.29) 현재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소득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으며,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세전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4.입주자격」 중 소득기준 및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형·소득구간별 임대조건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구간별 임대조건을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해당 시점의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조건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입주자 중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제2호 가목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3.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 상한 대상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전 별도 안내 예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아래의 신청자】
 ① **생계·의료급여수급자**
 ②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③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연7.0%,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연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1 【46A】 구간별 임대조건

[단위 : 원/월]

구간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5%)	잔금(95%)					
1구간	16,243,000	812,150	15,430,850	145,800	+	5,000,000	21,243,000	116,630
					-	11,000,000	5,243,000	177,880
2구간	18,564,000	928,200	17,635,800	166,630	+	8,000,000	26,564,000	119,960
					-	13,000,000	5,564,000	204,540
3구간	23,205,000	1,160,250	22,044,750	208,290	+	15,000,000	38,205,000	120,790
					-	17,000,000	6,205,000	257,870
4구간	30,166,000	1,508,300	28,657,700	270,780	+	26,000,000	56,166,000	119,110
					-	22,000,000	8,166,000	334,940
5구간	37,128,000	1,856,400	35,271,600	333,260	+	34,000,000	71,128,000	134,920
					-	27,000,000	10,128,000	412,010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	41,769,000	2,088,450	39,680,550	374,920	+	38,000,000	79,769,000	153,250
					-	30,000,000	11,769,000	462,420

2 【46A주거약자용】 구간별 임대조건

[단위 : 원/월]

구간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5%)	잔금(95%)					
1구간	15,868,000	793,400	15,074,600	142,440	+	4,000,000	19,868,000	119,100
					-	11,000,000	4,868,000	174,520
2구간	18,135,000	906,750	17,228,250	162,780	+	8,000,000	26,135,000	116,110
					-	13,000,000	5,135,000	200,690
3구간	22,669,000	1,133,450	21,535,550	203,480	+	15,000,000	37,669,000	115,980
					-	16,000,000	6,669,000	250,140
4구간	29,470,000	1,473,500	27,996,500	264,530	+	25,000,000	54,470,000	118,690
					-	21,000,000	8,470,000	325,780
5구간	36,271,000	1,813,550	34,457,450	325,570	+	33,000,000	69,271,000	133,070
					-	26,000,000	10,271,000	401,400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	40,805,000	2,040,250	38,764,750	366,270	+	37,000,000	77,805,000	150,430
					-	29,000,000	11,805,000	450,850

3 【55A, 55B】 구간별 임대조건

[단위 : 원/월]

구간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5%)	잔금(95%)					
1구간	19,367,000	968,350	18,398,650	173,840	+	5,000,000	24,367,000	144,670
					-	14,000,000	5,367,000	214,670
2구간	22,134,000	1,106,700	21,027,300	198,670	+	10,000,000	32,134,000	140,330
					-	16,000,000	6,134,000	245,330
3구간	27,667,000	1,383,350	26,283,650	248,340	+	18,000,000	45,667,000	143,340
					-	20,000,000	7,667,000	306,670
4구간	35,967,000	1,798,350	34,168,650	322,850	+	31,000,000	66,967,000	142,010
					-	26,000,000	9,967,000	398,680
5구간	44,268,000	2,213,400	42,054,600	397,350	+	40,000,000	84,268,000	164,010
					-	32,000,000	12,268,000	490,680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	49,801,000	2,490,050	47,310,950	447,020	+	45,000,000	94,801,000	184,520
					-	36,000,000	13,801,000	552,020

④ 【55B주거약자용】 구간별 임대조건

[단위 : 원/월]

구간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5%)	잔금(95%)					
1구간	18,992,000	949,600	18,042,400	170,470	+	5,000,000	23,992,000	141,300
					-	13,000,000	5,992,000	208,380
2구간	21,705,000	1,085,250	20,619,750	194,830	+	9,000,000	30,705,000	142,330
					-	15,000,000	6,705,000	238,580
3구간	27,132,000	1,356,600	25,775,400	243,540	+	17,000,000	44,132,000	144,370
					-	19,000,000	8,132,000	298,950
4구간	35,271,000	1,763,550	33,507,450	316,600	+	30,000,000	65,271,000	141,600
					-	25,000,000	10,271,000	389,510
5구간	43,411,000	2,170,550	41,240,450	389,660	+	40,000,000	83,411,000	156,320
					-	31,000,000	12,411,000	480,070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	48,837,000	2,441,850	46,395,150	438,370	+	45,000,000	93,837,000	175,870
					-	35,000,000	13,837,000	540,450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공급일정

신청접수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기간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4.08.09(금) 10시 ~ 13(화) 18시 ※ 신청기간 내 24시간 인터넷 신청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24.08.20(화)** 14시 이후	**'24.08.22(목) ~ 26(월)** 10시~17시(※토·일요일 및 점심시간 12~13시 제외)	**'24.11.28(목)** 14시 이후	전자	**'24.12.09(월) 10시 ~ 11(수) 17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현장	**'24.12.11(수) 10~17시** (※12~13시 제외)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LH청약플러스	LH세종 임대상담실	LH청약플러스		LH세종 임대상담실

- 현장 신청접수, 서류제출, 현장계약체결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LH세종특별본부 1층 임대상담실

- 현장 신청접수, 서류제출, 현장계약체결 등 현장업무 시간 : **10~17시** (점심시간(12:00~13:00), 주말 및 휴일 제외)
- 입주자격 조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일정 등은 연기될 수 있으며, 공급일정 연기 등 공지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 관련 서류 등(신분증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을 지참하시고 현장 방문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신청접수는 온라인접수[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본인 공동인증서 등을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LH세종 임대상담실)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신분증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지참)

- **신청(수정)접수는 지정된 접수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수정 및 취소도 신청기간 내에만 가능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로 신청한 내용은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신청한 내용은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주택] 주택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6-3M4블록 신혼희망타운 통합공공임대, 주택관리번호 : 2024000378

구분	조회방법
인터넷발급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한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 금액 및 회차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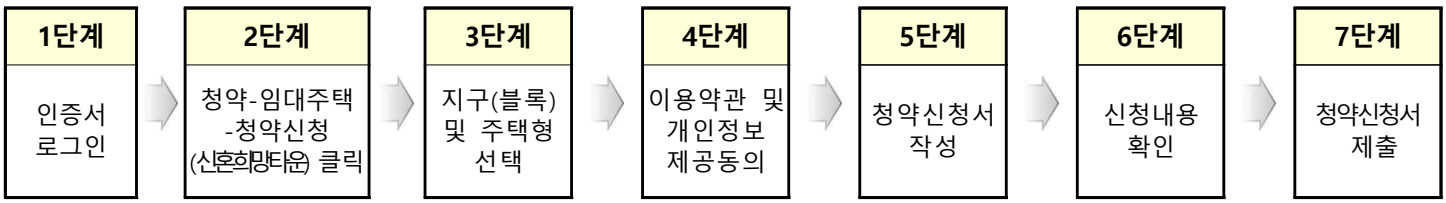
-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및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이후에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셔야 하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기간에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현장 방문신청자께서는 접수신청 시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모집호수의 일정배수를 선정**함에 따라, 자격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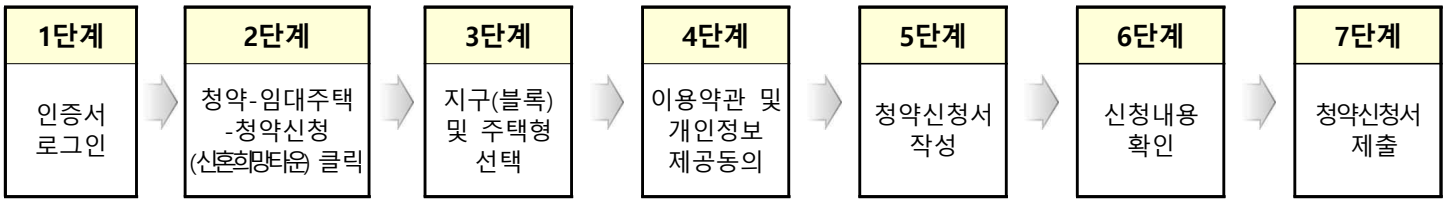
- **예비신혼부부는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고,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급계약은 해제**됩니다.
-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임신, 불법낙태, 입주 전 파양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은 해제**됩니다.
 - 임신부부 출산 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 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 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PC 신청방법 (인증서 준비 → LH청약플러스 접속 → 신청접수 → 신청완료)



- 인터넷 청약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전자공동인증서**(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발급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신청접수 전에 **LH청약플러스의 「청약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신청방법 (인증서 준비 → LH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신청접수 → 신청완료)



-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LH청약플러스' 앱(App)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방법 : 아이폰(IOS) → 앱스토어에서 검색 및 설치 /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Google Play)에서 검색 및 설치)
- 모바일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 있거나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복사 방법)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모바일 신청은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 신청이 가능한지 **LH청약플러스 앱(App)의 「청약연습하기」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스템 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신청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모바일 신청의 경우,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신청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입주자격 (기본자격 · 무주택 · 자산 · 소득 · 면적 등)

◇ 각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상에 기재된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7.29) 현재 ①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춘 ②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③ **자산·소득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④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⑤ **세대원수에 따른 면적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 자격을 추가 충족해야 함)

◇ 다만,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기본자격

■ 일반형 주택

구분		자격 설명
신혼부부 등	**❶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017.07.30 이후 혼인)
	❷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❸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2017.07.30 이후 출생, 태아 포함)를 둔 사람
한부모가족 ※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2017.07.30 이후 출생, 태아 포함)가 있는 사람

■ 주거약자용 주택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아래의 '주거약자 등'에 해당**하며, **위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춘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자산·소득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세대원수에 따른 면적을 공급합니다.

[주거약자 등]

㉮ 고령자(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소득 기준, 1세대 1주택 기준 및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의 자세한 사항은 해당 「4.입주자격」의 해당 항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를 통해 미성년자도 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자녀가 반드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형제자매가 반드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④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검증(주택소유, 소득, 자산)의 대상**이 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되며,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세대구성원의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주택소유가 확인되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 주택소유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후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거절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①과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③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②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③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에 유의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일 것

>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내지 다목에 따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중 빠른 날)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자산기준 및 산정방법

■ 자산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별도로 제정·고시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자산 가액 합계(자동차는 개별 자동차가액으로 판단)가 아래의 기준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산보유 기준표]

구 분	출산자녀수 (미성년자에 한함)		
	없음 (기준)	1인 (+10%p)	2인 이상 (+20%p)
총자산가액	345,000,000원 이하	380,000,000원 이하	414,000,000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0,000원 이하	40,790,000원 이하	44,500,000원 이하

(*) **출산자녀란 '23. 3.28 ('기준일')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입양자녀 및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20%p)를 자산보유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예비신혼부부의 보유 자산가액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자산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입주자격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부채는 총자산 산정 시 자산합계 금액에서 차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 자산항목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출처는「17.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자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및 산정방법

■ 소득기준

- 소득금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세전 금액으로, 신청자 세대의 월평균소득금액이 기준중위소득 대비 아래의 기준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표]

구 분		출산자녀수 (미성년자에 한함)		
		없음 (기준)	1인 (+10%p)	2인 이상 (+20%p)
세대원수 (태아 포함)	2인 (+10%p)	160%	170%	-
	3인 이상 (+0%p)	150%	160%	170%
맞벌이인 경우 추가 가산 (+30%p)				

(*) **출산자녀란 '23. 3.28 ('기준일')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입양자녀 및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 '출산자녀')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20%p)를 소득기준(150%)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예비신혼부부의 소득금액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세대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의미하며, **외국인 배우자,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를 포함**합니다.

- 신청자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은 41페이지 확인)이 있는 경우, 30%p를 추가로 완화 적용함
- 소득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입주자격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2024년 기준 금액)

[단위 : 원/월]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이하)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기타 소득구간				
	~30%	~50%	~70%	~100%	~110%	~120%	~130%	~150%	~160%	~170%	~180%	~190%	~200%
1인	668,534	1,114,223	1,559,912	2,228,445	2,451,290	2,674,134	2,896,979	3,342,668	3,565,512	3,788,357	4,011,201	4,234,046	4,456,890
2인	1,104,783	1,841,305	2,577,826	3,682,609	4,050,870	4,419,131	4,787,392	5,523,914	5,892,174	6,260,435	6,628,696	6,996,957	7,365,218
3인	1,414,397	2,357,329	3,300,260	4,714,657	5,186,123	5,657,588	6,129,054	7,071,986	7,543,451	8,014,917	8,486,383	8,957,848	9,429,314
4인	1,718,974	2,864,957	4,010,939	5,729,913	6,302,904	6,875,896	7,448,887	8,594,870	9,167,861	9,740,852	10,313,843	10,886,835	11,459,826
5인	2,008,721	3,347,868	4,687,015	6,695,735	7,365,309	8,034,882	8,704,456	10,043,603	10,713,176	11,382,750	12,052,323	12,721,897	13,391,470
6인	2,285,511	3,809,185	5,332,858	7,618,369	8,380,206	9,142,043	9,903,880	11,427,554	12,189,390	12,951,227	13,713,064	14,474,901	15,236,738
7인	2,554,498	4,257,497	5,960,496	8,514,994	9,366,493	10,217,993	11,069,492	12,772,491	13,623,990	14,475,490	15,326,989	16,178,489	17,029,988
8인	2,823,486	4,705,810	6,588,133	9,411,619	10,352,781	11,293,943	12,235,105	14,117,429	15,058,590	15,999,752	16,940,914	17,882,076	18,823,238

(*) 8인을 초과하는 가구의 기준소득은 1인 증가 시마다, 896,625원씩 증가합니다.

■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며, 소득항목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출처는 「17.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자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정방법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1세대 1주택 기준 공급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1세대 내에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까지 세대를 분리**한 후, 우리공사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에 해당**하므로 기 거주중인 임대주택을 당해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명도하여야 합니다.

면적기준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세대원수에 따른 적정면적 소비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따라, **입주자의 세대구성원 수(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대원수별 입주 가능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세대구성원수	1명*	2명	3명	4명 이상
공급가능 면적	전용 40㎡ 이하	전용 60㎡ 이하	전용 80㎡ 이하	제한 없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의 세대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까지 신청 가능

• 거주 중 세대원수 감소로 인한 공급면적 초과 시에는 임대조건이 할증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할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14.갱신 임대조건」 중 임대조건의 할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원수의 판단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에 따릅니다.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 자매 등은 제외되며,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는 세대원수에 포함)**

•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된 세대원 전원은 입주 시 **등본전입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전입 시 임대차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7.29)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 또는 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하며, **현장 신청접수자는 접수시점에 일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시,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은 모집호수의 일정배수를 선정함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공통 제출서류** (※ 공통서류 외 추가제출서류도 확인·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급신청서		· 공급신청서는 현장접수자만 제출하며, 현장제출 사무소에 (공사양식) 비치 ※ 인터넷 청약신청자 제출 불요	【양식1】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자필서명 · (동의방법) 공고 시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자필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가 거부됨	【양식2】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3】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처리될 수 있음	【양식4】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내용 확인 후, 신청자가 자필서명하여 제출 ※ 동의서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양식5】
주민등록표 등본 **(전부표기)**	**신청자 본인 (필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각 1통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해당자 (추가)	· **(배우자)**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제출 · **(기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각 1통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종특별자치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1통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의 세대원수 산정 및 소득구간 판정 시, 태아(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자 중 자산·소득 기준 상, 태아(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중 배점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입양관계 증명서	· 기준 중위소득의 세대원수 산정 및 소득구간 판정 시, 입양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자 중 자산·소득 기준 상,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택 신청자 중 중증장애인 자격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1통
감점 적용 배제 관련 서류 **[해당자만 제출]**	통합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입주자가 출산, 사망 또는 노부모 부양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금회 공고에 신청하는 경우 · 출산 : 기본증명서 등 세대구성원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 : 기본증명서 등 세대구성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노부모 부양 : 주민등록표등본	1통
기타	· 기타 입주자격 확인을 위해 우리공사가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해당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각 1통

■ **【해당하는 유형의 신청자】 추가 제출서류** ※ 서류가 중첩될 경우 1부만 제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제출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행정복지센터
【6세 이하 자녀가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필수) 자녀의 기본증명서 (해당자)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행정복지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해당자)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행정복지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 시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을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자)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공사 양식 (양식6), 행정복지센터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맞벌이로 신청 시 근로소득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전체이력'으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best 중 해당하는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 고령자(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장애가 있는 신청자는 ㉯에 따른 증빙서류 추가 제출** **※ 사회취약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는 수급자 증명서 추가 제출**	㉮ 제출서류 없음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 확인원 ㉱ ('12.7.1전 등록자) 지원대상자 확인원 ('12.7.1이후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 ㉯ 행정복지센터 ㉰ 국가보훈부(지청) ㉱ 국가보훈부(지청) ㉲ 국가보훈부(지청) ㉳ 국가보훈부(지청)

■ 현장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본인 또는 대리인)

구분	구비서류
본인 직접 신청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 대리 신청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 신청 (*예비배우자 포함)	①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은 여권은 여권 외 '여권정보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	

6. 인터넷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

신청자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기한 내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제출 이후 청약신청 철회 불가
-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신청자 서류 제출 현장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LH세종특별본부 1층 임대상담실
 -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서류제출 기간 : **2024.08.22.(목) ~ 08.26(월), 10:00~17:00**
 - 점심시간(12:00~13:00), 주말 및 휴일에는 서류제출을 받지 않습니다.
- 현장신청자는 청약신청접수 시 서류제출을 완료한 경우 해당 서류를 갈음합니다.

7. 입주자 선정방법

■ 일반형 주택

- 주택형별 배정호수 내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 시 ① **아래의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점일 경우 ②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태아 포함)에 한함)**를 우선 선정하며 잔여 주택에 대하여 ③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일반형 주택 배점기준표]

배점항목			3점	2점	1점	0점
1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 대비)	출산자녀	0인	50%이하	50%초과 70%이하	70%초과 100%이하	100%초과
		1인	60%이하	60%초과 80%이하	80%초과 110%이하	110%초과
		2인	70%이하	70%초과 90%이하	90%초과 120%이하	120%초과
2 부양가족 수 (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0인
3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 연속 거주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4 미성년자녀수 (19세 미만, 태아포함)			3명 이상	2명	1명	0명
5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	6회 미만
6 공사 통합공공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3점)			

[참고사항]

○ 1 번 항목 관련

- **출산자녀란, '23.3.28**(저출산 정책 발표일, **이하 '기준일'**)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 (입양자녀 및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를 의미함
- 기준일 이후 출산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 6번 항목 관련

- 기간산정 : 과거 공사 통합공공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통합공공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갱신계약은 제외)

※ 단, 입주자가 출산, 사망 또는 노부모 부양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 배제

- **[1]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당해년도의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합계액 비율로 산출**합니다.
- **[2] 부양가족 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 + 신청자의 형제, 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단, 「민법」 상 미성년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 **[3] 해당 주택건설지역**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행정구역(세종특별자치시)**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주택건설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간주합니다. (당해지역 거주기간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재등록일로부터 계속 거주기간을 산정)
- **[4] 미성년자녀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자녀가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로 확인함.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조손가정인 경우에는 직계비속을 의미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공급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우리공사 자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에 따른 잔여 동·호가 발생하여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정호수 내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 시 ① **아래의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②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태아 포함)에 한함)**를 우선 선정하고 잔여 주택에 대하여 ③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배점항목	3점	2점	1점	0점
[1] 부양가족 수 (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0인
[2]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 연속 거주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3]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4] 사회취약계층 (3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5] 공사 통합공공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3점)			
[참고사항] ○ [5]번 항목 관련 - 기간산정 : 과거 공사 통합공공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통합공공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갱신계약은 제외) ※ 단, 입주자가 출산, 사망 또는 노부모 부양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 배제				

- **[1] 부양가족 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 + 신청자의 형제, 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단, 「민법」 상 미성년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 **[2] 해당 주택건설지역**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행정구역(세종특별자치시)**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주택건설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간주합니다. (당해지역 거주기간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재등록일로부터 계속 거주기간을 산정)
- **[3]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장애인 증명서를 통해 판단)에 따르며, 장애정도 관한 자세한 사항은 「16.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사회취약계층**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수급자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가점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공급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우리공사 자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에 따른 잔여 동·호가 발생하여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에 따른 공가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발표는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계약안내

■ **전자계약 【계약기간 : '24.12.09(월) 10:00 ~ 11(수)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 rowspan="2">계약금 입금</td><td rowspan="2">우리공사 입금확인
(SMS 발송)</td><td>【PC 계약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td><td>【모바일 계약체결】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Google Play)</td></tr>
<tr><td colspan="2">로그인 (공동인증서/휴대폰인증) → 계약체결(공동인증서)
→ 계약서 출력, 보관(공동전자문서센터)</td></tr>
</table>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 **「우리공사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SMS는 신청접수 시 "SMS 수신동의"한 신청자에 한하여 발송하고, 수신동의하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저장이 가능합니다.

■ **현장계약 【계약기간 : '24.12.11(수) 10:00 ~ 17:00】**

공통서류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 계약금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9. 기타 유의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공주택 특별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접수]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신청접수 마감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 원칙에 따라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신청자 및 배우자(예비배우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해당)가 동시신청 하는 경우 중복 신청에 해당)]**
- **[제출서류]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 7.29)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①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해제되며,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②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배우자는 반드시 신청 당시 제출한 예비배우자이어야 함)**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미제출 등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이 해제되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③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됩니다.

- **[자격검증 부적격자 소명절차]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8.12.11)에 따라 **분양권등(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당첨자 발표일 이전에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당첨이 되더라도 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부적격 해제되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기간]** 최대 거주기간은 **6년(자녀가 있을 경우 10년)**입니다.
- **[갱신계약]** 신혼희망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주거약자용 주택의 갱신계약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갱신임대조건은 **갱신계약 시점 입주자의 자산·소득금액, 소득구간 및 임대시세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14.갱신 임대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계약 조건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② 자산·소득·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갱신계약 체결이 가능하나,「14. 갱신 임대조건」 임대조건의 할증 규정에 따라, **자산·소득·면적 초과비율 등에 따라 소정의 할증이 부과**됩니다.

(*)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후 퇴거 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갱신계약이 거절되고,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차량등록]**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의 타인소유 차량은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 **[전입신고]**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우리공사에서 제공하는 전화 및 방문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을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App)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우리공사로 서면통보**(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LH세종특별본부 1층) 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은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서류제출대상자는 서면통보의 방법으로 변경 가능)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 중에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 입주개시 이전에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등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입주예정 시기는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및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간주**합니다.
- **입주 시 잔금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 본인 확인 후 세대열쇠를 교부**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미납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제 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증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가능하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해당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설치, 대출 등)는 우리공사와 무관**합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시**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엘리프 세종 6-3) 개발방식은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이며, 계룡건설산업(주)의 브랜드가 사용됩니다.

10. 지구 및 단지여건 등

지구여건

ㅇ 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진행 중이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 될 수 있음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외의 도로 및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학교용지 조성공사 등 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의 특화권역 및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 등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지구 및 단지외부여건은 추후 정부정책이나 상위계획,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북측에 자동크린넷 집하장이 입지하여 생활여건에 따른 냄새 등 불편이 발생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북측에 가스공급시설 설치 및 운영 예정임
- 당해 지구 북측에 세종필드G.C(골프장)가 운영 중이며,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북서측에 은하수공원(장례식장 등)이 위치해 있음
- 당해 지구 동측에 송전탑이 위치하고 있음

• 당해 지구 서측에는 보도연맹 희생자 추모공원(문화6-12)이 계획되어 있음
• 당해 지구 북측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이격거리(직선) 약 430m 지점]

단지 [내 · 외부] 여건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변 개발계획(공원계획 포함)은 향후 개발 및 실시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CG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접 공원·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레벨차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 주변으로 지형의 고저차로 인한 조망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와 인접하여 전력공급을 위한 전선로, 지중화용 지상기기, 전력시설물, 통신시설물, 수도시설물, 노상시설물(전주, 가로등 등), 공공기반시설물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본 단지가 포함된 생활권은 미준공 구간으로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도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블럭 남측으로 BRT 도로 등이 위치해 있고, 주변으로 공동주택 등이 건축공사 중(또는 예정)이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녹지 등)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음

• 본 단지 남측에는 BRT도로변, 서측에는 주상복합용지(H2BL), 북측에는 초등학교용지, 보육시설, 종교시설용지, 동측에는 근린공원이 계획되어 있음
• 당해 지구 북측에 세종필드G.C(골프장)가 운영 중이며,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북서측에 은하수공원(장례식장 등)이 위치해 있음
• 본 단지 북서측, 남서측으로 26m 도로 등이 인접하여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주변으로 지형의 고저차로 인한 조망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레벨차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주·부출입구에는 가감속차로가 별도 시공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문화공원 등)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주변 상업시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진·출입시 인접(인근) 원형교차로 이용을 인지·수인해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와 인접하여 전력공급을 위한 전선로, 지중화용 지상기기, 전력시설물, 통신시설물, 수도시설물, 노상시설물(전주, 가로등 등), 공공기반시설물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전세대 전면부는 발코니 입면분할창으로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하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이사를 하여야 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본 단지 지하 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지하1,2층 2.7m로 계획되었음
• 본 단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 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한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 단지 내에는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이 같은 동 내 혼합 배치되어 있음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한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공고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일부 동은 1, 2층 필로티 및 부대시설로 시공되어,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레벨 차이 및 단지 외부 연결 보행통로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 및 단지레벨, 시설물, 보행통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보도, 조경,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단지 경계부는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단지 내 조경식재,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옹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 · 외 도로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자동차 소음 및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음

- 각 동 전·후면 조경 공간에는 이동식피난기구(공기안전매트) 사용을 위해 일부 식재가 생략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과 각 동 계단실, 엘리베이터홀이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임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 인근 주차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2개소이며, 아파트 주차대수는 지하 1,410대(지하2층 873대, 지하1층 537대)이며, 그 중 47대(지하2층 24대, 지하1층 23대)는 장애인 주차장임 (장애인 주차대수는 동별로 상이함)
- 근린생활시설(상가)와 아파트 주차장 입구는 분리 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상가) 주차대수는 지하 1층에 36대임
- 816동은 지하1층 부대시설 배치로 인하여 지하1층 동출입구가 없음, 지하2층 동출입구를 이용하여 주차장 접근이 가능함.
-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경계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근린생활시설 전면부 포함)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물건 상하차를 위한 차량 포함)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어린이놀이터 포함), 운동시설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층간, 세대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동별옥상에는 공용배기방식의 환기팬(주방 환기용) 및 무동력흡출기(욕실 환기용)가 있어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이와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 및 자동크린넷은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후 설치될 예정이고 특히 생활자원보관소 및 자동크린넷은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으며 주변으로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함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열교환실),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통합기계실 설치위치 : 1개소(801, 816동 인근), 열교환실 설치위치 : 1개소(805동 인근)]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팬룸이 설치되어 있으며 팬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는 지하주차장 배수는 집수정 내 PUMP를 이용하므로 유입수, 조경배수 등 배출을 위한 공동전기료 발생됨
- 주민공동시설의 냉·난방기 실외기는 내부에 설치되어있음
-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냄새 또는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 문은 관련법규에 따라 점검구로 설치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의 일부 구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에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1층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 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자동크린넷 시스템을 적용하여, 동 인근에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를 위한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 됨
- 쓰레기 투입구 위치는 단지 내 지반 높이에 따라 계단이 설치될 수 있음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의 경우, 801·802동[1·2·3호 라인/2대(17인승, 15인승)], 804·808·810·811·814동[1·2·3·4호 라인/2대(17인승)], 809동[1·2·3·4호 라인/2대(17인승,15인승)], 803·805동[1·2호 라인/1대(15인승),3·4호 라인/1대(15인승)], 806·807동[1·2·3호 라인/1대(15인승),4·5호 라인/1대(15인승)], 812·813·815·816동[1·2호 라인/1대(15인승),3·4호 라인/1대(15인승)]간에 1대당 사용하는 세대 라인수가 다름
- 아파트 및 상가 전력공급설비인 한전 PAD TR 및 PAD SW가 단지 내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인접세대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
- 공동주택 특성상 지하주차장내 지하1,2층에 전기실·발전기실 등 공용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기실·발전기실 설치로 인해 인근 동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 무인택배보관함, 스마트우편함은 각동 코어별 지상1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택법」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임. 이와 관련,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세종특별자치시와 체결할 예정이나, 입주(예정)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북카페, 방과후교실, 경로당 등), 어린이집 등에 내부 시설물(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단, 피트니스센터에 운동기구는 사업주체 지침에 따라 최초 입주 시에 제공될 예정이며 설계 및 제공되는 운동기구(의자, 소파 등 이동식가구 등 기타 비품은 일체 제공되지 않음)에 대해서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아파트 각 층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의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상이하여 환기 및 채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 전세대 전면부는 발코니 입면분할창으로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하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이사를 해야함
- 시설물의 위치·구조·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와 지반현황 및 각종 평가·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명칭·동표시·아파트 문양·BI로고·벽체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내부마감이 없으며 별도의 실(室)로 사용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내 경사로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디자인 계획에 의해 일부 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고, 강우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문양 등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한 색상과 무늬의 자재가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세탁실)공간이 협소하여 대용량세탁기 및 건조기 설치가 제한되거나, 세탁기문과 벽 및 기타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욕실천정에 설치되는 욕실팬은 평형별로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음
- 욕실팬 작동 직후에 댐퍼가 열리는 동안 운전음(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실이 내부에 있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구조벽 외 조적벽체, 경량벽체 등이 시공될 예정임

- 거실 아트월 및 주방벽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 각 단위세대 형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길이가 서로 상이함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본공사 시 달라질 수 있음
- 세대 천장고는 2.4m로 시공오차에 의해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 있는 벽, 바닥, 천장은 원활한 시공을 위해 별도의 마감이 없음
- 세대 내 타일 및 아트월 나누기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은 습식욕실로 시공됨
- 세대 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강제급기+강제배기)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공기배출구)는 거실과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시 소음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주방배기는 옥상에 배기팬이 설치되고 세대 렌지후드에는 댐퍼만 설치되는 공동배기방식을 적용함
- 수도꼭지(세탁, 손빨래, 물뿌리기)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에는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음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에는 일부 세대의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됨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팸플릿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 가동으로 전기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설비시스템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4항 제5항 및 제16조)
- 810동 옥상에 지상파(디지털)안테나 및 무궁화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여건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CCTV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각 동 출입구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지하주차장에 설치됨
- 세대 무인경비 동작감지기는 1,2층 및 최상층은 발코니 및 침실의 창호 측면부 각 1개소에 설치되며, 그 외층 동작감지기는 거실 창호 측면부 1개소에 설치됨
- 생활정보기가 설치되며, 일괄소등, 날씨정보, 엘리베이터 호출 및 가스차단 기능을 함
- 단지 내 주·부출입구에 디지털차량번호인식시스템의 주차관제(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될 예정임
-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동은 차량 진·출입 시 경보음 발생과 차량전조등 불빛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발코니 전기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 및 전열교환기 전원용 콘센트 등 주방발코니에 한하여 설치됨
- 각 동에 설치된 승강기, 승강로 및 승강기기계실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이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음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됨
- 세대단자함이 침실내에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세대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설치되며 위치변경은 불가능함
- 무선랜(무선AP) 초기비밀번호는 입주 시 안내될 예정이며, 입주 후 비밀번호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일부동.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됨
- 일부동 지붕층(801,802,804,808,809,810,811,814동)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집광판이 설치되며,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동별 설치면적 및 설치위치는 달라질 수 있음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따라 각동 옥상과 지하 PIT공간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서비스안테나를 지하층, 옥상 (801,802,803,804,805,806,808,811,813,814,815,816동)에 설치할 예정임. 단, 설치장소 및 설치수량은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현관, 발코니 등 바닥 단차는 시공 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발코니 내 하향식피난구는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세대내부 일부 벽체(아트월 일부 포함)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자동식소화기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평형은 상부장의 일부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음
- 주방 상부장이 천장과 이격시공으로 일부 배관 및 배선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 배관,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며 침실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급수·급탕계량기함은 공용PD에 설치되며, PD점검구와 세대 현관문이 간섭될 수 있음
- 주방가구, 반침가구, 조명기구, 소화용기구, PVC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될 예정이며, 팸플릿 등에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 시 선정된 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됨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이 되지않을 수 있음
- 지역난방방식 난방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발생되는 과다한 세대 난방요금 등은 하자가 아니며, 입주 초기 공실 세대로 인한 공용부위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음(동호변경 등 불가함)
- 일부 발코니에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는 설치되는 환기설비장치 및 우오수 배관 등은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하여야함
- 세대 내 기본설치 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전(全)실에 설치되며,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 침실2, 알파룸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설치됨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됨
- 해당 단지는 2022년 1월 17일 주택건설사업승인이 완료된 사업장으로 바닥충격음 사후확인 미해당 사업장임

기타사항

- 전·입학, 학급편성, 학교운영 등 관련 안내사항은 세종시교육청 전입학 원스톱 지원센터(☎ 044-320-2161~3)로 문의
- 초등학교(초6-3)는 입주시 산울초등학교(가칭)로 배치될 예정임('25.3월 개교예정)
- 중학교(중6-3)는 입주시 산울중학교(가칭)로 배치될 예정임('25.3월 개교예정)
- '초등학교 및 중학교 통학구역'은 교육청에서 개교 전에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고시되므로 변경될 수 있음
- 학교설립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인접 동에 소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 상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학생수용계획, 기타 여건 변경에 따라 학교 설립시기와 계획은 조정될 수 있음

11.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아래 공공주택성능등급은 예비인증 내용으로, 본 인증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외벽(직접면)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LED조명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지붕	적용	절수설비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 공동주택성능등급

1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화장실 급배수 소음	★

2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내구성	★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3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해당없음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해당없음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해당없음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에너지 성능	★★★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신·재생에너지 이용	★★★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해당없음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저탄소 자재의 사용	★★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해당없음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빗물관리	해당없음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해당없음
절수형 기기 사용	★★

3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연계된 녹지축 조성	해당없음
자연지반 녹지율	★
생태면적률	★
비오톱 조성	해당없음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자연 환기성능 확보	해당없음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4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단지 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대중교통의 근접성	★★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 제공	★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방범안전 콘텐츠	★★

5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 성능	★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피난설비	★★★

12.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공종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6-3M4블럭	한국토지주택공사 계룡건설산업(주) 금호건설(주) 이수건설(주) 흥한주택종합건설(주) ㈜신흥디앤씨	공공주택	계룡건설산업(주) 금호건설(주) 이수건설(주) 흥한주택종합건설(주) ㈜신흥디앤씨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주식회사 대성CM 건축사사무소

13.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

입주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급형·소득구간별 임대조건에도 불구하고, 임대조건 상한 금액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단, 신청자의 미신청 시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임대조건 상한 대상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전 별도 안내 예정

※ 임대조건 상한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입주자에게 주거급여 수급여부와 시행 중인 고시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에 따라, 적용여부 및 임대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 청약신청자 본인이 아래 ①~④에 해당되어야 함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① (가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② (나목)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③ (다목)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④ (라목)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상한계산 기준

•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수급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담**

주거급여	임대조건 상한
수급 ○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에 입주자가 수령하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전환임대료 범위 내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급 ×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제2호 가목**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주거급여법」제7조 제3항 및「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의미합니다.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전환임대료**는「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7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의 소득에 따른 기본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을 환산**한 임대료를 의미합니다.
- 임대조건 상한 적용은 **계약시점의 주거급여 수급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시점에 한하여 적용**하며, 임대차기간 중 소득 및 자격변경 등에 따라 임대조건 변경은 불가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임대조건

- 주거급여 수급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이하인 자(소득구간계수 1~2구간에 해당)"**임에 따라, 임대조건 상한에 따른 임대조건은 1~2구간만 안내드립니다.
- **아래 임대조건 표에서 확인되지 않는 가구의 상한 임대조건(세대구성원 수 5인 이상)은 우리공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은 계약체결일 기준 시행중인 고시단가를 적용하므로 **아래의 임대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46A, 46A(주거약자) 임대조건 : 기본 임대조건(P.5~6 참조)과 동일

2 55A, 55B 임대조건

[단위 : 원/월]

세 대 구성원수	(기본) 임대보증금			(기본) 월임대료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계	계약금(5%)	잔금(95%)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1구간 입주자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 기본임대조건과 동일								
2구간 입주자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 : 세대구성원수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 임대조건과 동일								
2인	19,497,000	974,850	18,522,150	175,000	+	6,000,000	25,497,000	140,000
					-	14,000,000	5,497,000	215,830
3인 이상	22,134,000	1,106,700	21,027,300	198,670	+	10,000,000	32,134,000	140,340
					-	16,000,000	6,134,000	245,330

3 55B(주거약자) 임대조건

[단위 : 원/월]

세 대 구성원수	(기본) 임대보증금			(기본) 월임대료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계	계약금(5%)	잔금(95%)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1구간 입주자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 기본임대조건과 동일								
2구간 입주자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 : 세대구성원수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 임대조건과 동일								
2인	19,497,000	974,850	18,522,150	175,000	+	6,000,000	25,497,000	140,000
					-	14,000,000	5,497,000	215,830
3인 이상	21,705,000	1,085,250	20,619,750	194,830	+	9,000,000	30,705,000	142,330
					-	15,000,000	6,705,000	238,580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임대조건

공급형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5%)	잔금(95%)					
46A	4,650,000	232,500	4,417,500	92,530	+	전환불가	4,650,000	92,530
					-	2,000,000	2,650,000	98,360
46A (주거약자)	4,650,000	232,500	4,417,500	92,530	+	전환불가	4,650,000	92,530
					-	2,000,000	2,650,000	98,360
55A	5,543,000	277,150	5,265,850	110,290	+	전환불가	5,543,000	110,290
					-	2,000,000	3,543,000	116,120
55B	5,542,000	277,100	5,264,900	110,270	+	전환불가	5,542,000	110,270
					-	2,000,000	3,542,000	116,100
55B (주거약자)	5,542,000	277,100	5,264,900	110,270	+	전환불가	5,542,000	110,270
					-	2,000,000	3,542,000	116,100

14. 갱신 임대조건

기본원칙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자산, 면적기준, 거주기간)을 갖춘 임차인에 대한 갱신 임대조건은 **갱신계약 시점의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임차인 세대의 월평균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소득구간계수(0.35~0.90)를 적용하여 산정한 임대조건**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5% 이내의 인상률 범위에서 변경 적용됩니다. **다만, 동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소득 및 자산기준 초과자는 제외하며, 자세한 사항은 「임대조건의 할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갱신계약 시점의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조건 산정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갱신 임대조건 산정 방법
 - **갱신계약 시점의 임대시세로 산정**하되, **종전계약 시 적용한 임대시세에서 우리공사에서 결정하는 임대조건 인상률 범위 내(최대 5% 이내)로 결정**

구분	① 시세요소	③ 소득요소
보증금	(갱신시점) 임대시세 × 35%	× (갱신시점) 소득구간계수
임대료	(갱신시점) 임대시세 × 시장전환율 × 65% ÷ 12	× (갱신시점) 소득구간계수

② 제약요소 ➜ 5% 이내 인상 제한

 - 시장전환율은 **실제 해당지역에서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말하며, 갱신시점의 소득구간계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갱신시점의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구간계수**를 의미

- (예시) 시중시세 5% 이상 지속 증가 + 입주자 소득변동으로 소득구간 계수가 변경(2→3→1구간)되는 경우

[단위 : 원]

구분	시중 전세시세	소득계수	임대조건 (시장전환율 4% 가정)		산출내역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최초계약	100,000,000	(1구간) 35%	12,250,000	75,830	[보증금] Min[①시세요소,②제약요소] × 소득계수(0.40)
		(2구간) 40%	**14,000,000**	**86,660**	① 100,000천원 × 35%
		(3구간) 50%	17,500,000	108,330	② -
		(4구간) 65%	22,750,000	140,830	[월세] Min[①시세요소,②제약요소] × 소득계수(0.40)
		(5구간) 80%	28,000,000	173,330	① 100,000천원 × 65% × 4% ÷ 12
		(6구간) 90%	31,500,000	195,000	② -
1차 갱신계약	120,000,000	(1구간) 35%	12,862,000	79,620	[보증금] Min[①시세요소,②제약요소] × 소득계수(0.50)
		(2구간) 40%	14,700,000	90,990	① 120,000천원 × 35%
		(3구간) 50%	**18,375,000**	**113,740**	② 100,000천원 × 35% × (1+5%)
		(4구간) 65%	23,887,000	147,870	[월세] Min[①시세요소,②제약요소] × 소득계수(0.50)
		(5구간) 80%	29,400,000	181,990	① 120,000천원 × 65% × 4% ÷ 12
		(6구간) 90%	33,075,000	204,750	② 100,000천원 × 65% × 4% ÷ 12 × (1+5%)
2차 갱신계약	130,000,000	**(1구간) 35%**	**13,505,000**	**83,600**	[보증금] Min[①시세요소,②제약요소] × 소득계수(0.35)
		(2구간) 40%	15,435,000	95,530	① 130,000천원 × 35%
		(3구간) 50%	19,293,000	119,420	② 100,000천원 × 35% × (1+5%) × (1+5%)
		(4구간) 65%	25,081,000	155,260	[월세] Min[①시세요소,②제약요소] × 소득계수(0.35)
		(5구간) 80%	30,870,000	191,080	① 130,000천원 × 65% × 4% ÷ 12
		(6구간) 90%	34,728,000	214,980	② 100,000천원 × 65% × 4% ÷ 12 × (1+5%) × (1+5%)

- **소득(6구간), 자산, 면적 기준 초과자**는 갱신 임대조건에 할증이 부과되며, 자세한 사항은 「임대조건의 할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조건의 할증

입주자격을 갖추고 입주하였으나, **갱신계약 시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차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할증된 임대조건이 부과**(1~4)됩니다. 할증이 두 개 이상의 항목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아울러 갱신계약 시점의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조건 할증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할증조건

1 소득기준 초과

- **갱신계약 시 소득기준(6구간,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을 초과한 경우, 소득구간계수 0.90(6구간)을 적용한 갱신 임대조건(기본원칙)에 소득기준 초과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p 이하	105%	110%
	10%p 초과 30%p 이하	110%	120%
	30%p 초과	115%	130%

※ 30%p 초과 구간을 적용받는 사람은 해당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할증비율에 최초 갱신 시 10%p, 2회차 갱신 시 20%p를 더하여 할증하고 3회차 이상부터는 직전 적용받았던 할증비율에 10%p씩 계속 가산 할증됩니다.

2 자산기준 초과

- **갱신계약 시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갱신 임대조건(기본원칙)에 130%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합니다.

※ 해당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갱신 시 10%p, 2회차 이상부터는 직전 적용받았던 할증비율에 10%p씩 계속 가산하여 할증됩니다.

3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초과

- **세대원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세대**에 대한 **최초 또는 갱신계약 시, 최초 또는 갱신 임대조건(기본원칙)에 다음과 같은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합니다. 다만, 거주 중 세대원수 감소로 인한 공급기준 면적 초과 시에는 해당 세대원수 공급면적의 주택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대원수별 공급면적	입주 시	입주 후 세대원수 변화
1인 :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 (중증장애인은 50㎡ 초과 60㎡ 이하) 2인 : 전용면적 60㎡ 초과 80㎡ 이하 3인 : 전용면적 80㎡ 초과 85㎡ 이하	입주불가	105%
1인 : 전용면적 60㎡ 초과 80㎡ 이하 2인 : 전용면적 80㎡ 초과 85㎡ 이하	입주불가	110%
1인 : 전용면적 80㎡ 초과 85㎡ 이하	입주불가	115%

4 최대 거주기간 초과

- 입주자격을 갖추었으나, **최대 거주기간(6년 또는 10년, 연장된 거주기간)을 초과한 세대**는 당해 신혼희망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가 불가하며, 주택명도 대상이 됩니다.

■ 할증조건의 중복적용 시

- 임대조건 할증조건(1~4)이 중복되는 입주자에 대한 갱신계약 시, **갱신 임대조건(기본원칙)에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합니다.
- (예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대비 190%, 자산 5억원, 공급면적 59㎡ 갱신계약 시

1 소득기준(*)	2 자산기준	3 면적기준	4 거주기간	최종 할증률
110%	130%	105%		130%

(*)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70% 대비 20% 초과

■ 할증조건 예외대상

임대조건 할증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의2 및 국토교통부 고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할증(소득, 자산, 면적기준 초과에 한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칙 및 고시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갱신계약 시점의 관련 법령에 따라 할증조건 예외대상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를 초과하더라도 입주자격 구분별 소득구간 상한까지는 소득기준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	임대조건
① 가구원 수가 1명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70% 이하인 자** ② 가구원 수가 2명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60% 이하인 자** ③ 가구원 수가 2명, 출산자녀가 1명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70% 이하인 자** ④ 가구원 수가 3명 이상, 출산자녀가 1명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60% 이하인 자** ⑤ 가구원 수가 3명 이상, 출산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70% 이하인 자**	6구간 적용 (할증 미적용)

- **(자산기준)** 출산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은 **자산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아래의 상한금액까지는 자산기준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 분	출산자녀수		
	0명	1명	2명 이상
총자산가액	345,000,000원 이하	380,000,000원 이하	414,000,000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0,000원 이하	40,790,000원 이하	44,500,000원 이하

- **(면적기준)** 세대원수 감소로 인한 공급기준 면적 초과 시 **해당 세대원수 공급면적의 주택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면적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5. 편의시설 설치 안내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동체감지기 설치(동작 On/Off 선택 가능)	전체세대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수건걸이 높이 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은 입주 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청시 필요서류)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계약 체결기간 내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 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방향 조정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ㅡ자형 각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1개)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씽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주거약자세대 욕실 출입문은 외부폭 90cm인 포켓도어로 설치(욕실 출입문 규격확대 불가)

16.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 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 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 생활 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 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 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7.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자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지방세정 자료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 자료 반영순위(①국민건강보험공단→②국민연금공단→③근로복지공단→④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팸플릿 배부처		**LH세종 임대상담실 044)905-1212** (평일 09:30~17:30, 12~13시 점심시간) ※ 임대상담실은 공고~청약접수, 서류제출기간 등 한시 운영
임대 문의	**전 화**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12~13시 점심시간) LH세종 임대상담실 044)905-1212 (평일 09:30~17:30, 12~13시 점심시간)
	인터넷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
당첨자 ARS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온라인 청약접수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현장접수처 (약도)		
현장접수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LH세종특별본부 1층 LH세종 임대상담실 044)905-1212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7.29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